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121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정기주차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5조 단서조항을 “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 로 수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 단서조항을 “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주차요금)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,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한다. 다만,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5조(주차요금) _____ _____ _____. 다만, 정기주차요금과 주차요금 감면에 _____ _____.